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 - 7
------------	--------

제출년월일 : 2016.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정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제3항)

-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

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및 해촉 규정 마련

라. 기타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11. 26. ~ 2015. 12. 16.(의견제출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라. 기획예산과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1.14.)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사.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2021년 3월 16일까지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금운용관에게”를 “기금운용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에 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② (생 략)</p> <p>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운용관에게</u>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원에게</u> 이를 준용한다.</p> <p>④ · ⑤ (생 략)</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생 략)</p> <p>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p>	<p>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 ----- ----- 2021년 3월 16일까지로 ----- ----- ----- ----- ----- ----- ----- -----.</p> <p>제6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기금운용관에게</u>,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p>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

⑤ · ⑥ (생 략)

<신 설>

--- 2회에 한하여 연임 --.

-----.

④ 심의회의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

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최한중
연락처	02-3153-8553